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  |  |  |
| --- | --- | --- |
| 구분 | 이사 | 감사 |
| 임원정수 | 12인 | 2인 |
| 재적임원 | 12인 | 2인 |
| 참석임원 | 11인 | 2인 |

1. 일 시: 2019.4.24(수) 10:00 ~ 12:00 (회의소집통보일: 2019.4.16)

2. 장 소: 서울 POSCO센터 서관 18층(스틸클럽)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 임원

- 이사(11인): 이사장 최정우, 이사 홍유신, 이사 최영우, 이사 이영선,

이사 장영원, 이사 강교철, 이사 손봉락, 이사 김도연,

이사 김진한, 이사 박성호, 이사 이문석

- 감사(2인): 감사 권오갑, 감사 강성원

나. 결석 임원(1인): 이사 허염

4. 안건

가. 의결안건

①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안

② 정관 변경안

③ 임원 선임안

④ 교원 처우 개선안

나. 보고안건

① 전임교원 임용결과 보고

② 블록체인 캠퍼스 구축 결과 보고

③ 산학연 통합구매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5. 개회선언

당 법인 정관 제29조의 소정 절차에 의거한 2019.4.16 소집통보에 따라 최정우 이사장은 금일 10:00의 이사회가 정관 제27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6. 회의내용

가. 의결안건

①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안

○ 이사장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안 발의 후 강성원 감사에게 감사의견을 요청하다. 감사의견은 “2019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동 회계연도 중 개최된 이사회의 운영 및 재산·회계에 관한 사항의 감사결과,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하는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 및 재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감사보고 후 신현곤 법인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이영선 이사의 동의, 김도연 이사의 재청을 거쳐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및 법인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의거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승인ㆍ의결함.

1. 법인회계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
| 자금계산서 | | | 대차대조표 | | |
| 수입 | 지출 | 과부족 | 자산 | 부채 | 기본금 |
| 663 | 627 | 36 | 11,977 | 28 | 11,949 |

2. 교비회계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
| 자금계산서 | | | 대차대조표 | | |
| 수입 | 지출 | 과부족 | 자산 | 부채 | 기본금 |
| 1,522 | 1,518 | 4 | 4,904 | 194 | 4,710 |

3. 가속기회계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
| 자금계산서 | | | 대차대조표 | | |
| 수입 | 지출 | 과부족 | 자산 | 부채 | 기본금 |
| 599 | 488 | 111 | 848 | 12 | 836 |

② 정관 변경안

○ 이사장은 정관 변경안을 발의하고 신현곤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안건에 대해 논의 후 김진한 이사의 동의, 박성호 이사의 재청을 거쳐 정관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1. 정관 변경 내용

|  |  |
| --- | --- |
| **현행** | **변경안** |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생략)**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 이사 9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
|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교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6. ~ 8. (생략)**  **③ (생략)** |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총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교원의 임용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제1관 임 면**  **제46조 (임면)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총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면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해임 및 파면은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1. ~ 5. (생략)**  **6. 기타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④ 대학의 부총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제외)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기타 교원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 처장, 포항가속기연구소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은 그 임면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관 임 용**  **제46조 (임용)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총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해임 및 파면은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1. ~ 5. (생략)**  **6.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④ 대학의 부총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제외)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기타 교원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 처장, 포항가속기연구소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은 그 임용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 11. (생략)**  **<신설>** | **제4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 11. (현행과 같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 **제48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10.(생략)**  **<신설>** | **제48조(휴직의 기간)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제47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 **제49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생략)**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49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제5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월봉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봉액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 **제5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월봉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봉액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
| **제57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7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5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총장이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의 그 동의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② 인사위원회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근무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제5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총장이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동의에 관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근무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
| **제70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0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 **제72조 (징계의결) ① (생략)**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제72조 (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제72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제72조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면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2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임용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제72조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74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제74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 **제7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 **제7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
| **제78조 (임면)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면”이라 한다)은 임면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제78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 **부 칙**  **<신 설>** |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2019. 4. 24부

③ 임원 선임안

○ 제3호 안건 상정에 앞서 정관 제2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 의거 이영선 이사는 퇴장하다. 이사장은 임원 선임안을 발의하고 신현곤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안건에 대해 논의 후 김진한 이사의 동의, 홍유신 이사의 재청을 거쳐 임원 선임안을 이영선 이사를 제외한 이사 10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의결 후 이영선 이사 재입장)

【의결 내용】

□ 2019. 5. 21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영선 이사와 강성원 감사의 후임 선임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  |  |  |  |  |
| --- | --- | --- | --- | --- |
| 직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임 기 | 비고 |
| 이사 | 이 영 선  (李 榮 善) | 470826- | ’19.5.22 ~’23.5.21  (4년) | 중임  교육이사 |
| 감사 | 이 희 환  (李 喜 煥) | 610212- | ’19.5.22 ~’21.5.21  (2년) | 신임 |

\* 임기는 교육부 승인 전제

④ 교원 처우 개선안

○ 이사장은 교원 처우 개선안을 발의하고 전상민 교무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이사장은 ‘조교수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세부 시행기준을 잘 마련해서 시행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홍유신 이사의 동의, 이문석 이사의 재청을 거쳐 교원 처우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19학년도 특별예산 지원을 다음과 같이 승인ᆞ의결함.

|  |  |  |
| --- | --- | --- |
| **구분** | **주요내용** | **소요예산** |
| 비누적 성과급 | 주요 과기대와의 조교수 연봉 격차 해소 및 재직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비누적 성과급 지급 | 10억원 |
| 특별정착비 | 대학 차원의 전략초빙 교원에 대한 초기정착비 추가 지원 | 10억원 |
| 계 |  | 20억원 |

\* 특별예산 편성을 위한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시 추후 이사회 별도 승인

\* 2020년 이후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세부계획 반영

나. 보고안건

① 전임교원 임용결과 보고

○ 이사장은 전임교원 임용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전상민 교무처장으로부터 관련내용을 보고받다. 이사장은 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토의를 거친 후 보고를 수리하다.

② 블록체인 캠퍼스 구축 결과 보고

○ 이사장은 블록체인 캠퍼스 구축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심재윤 산학처장으로부터 관련내용을 보고받다. 이사장은 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토의를 거친 후 보고를 수리하다.

③ 산학연 통합구매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 이사장은 산학연 통합구매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김군역 행정처장으로부터 관련내용을 보고받다. 이사장은 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토의를 거친 후 보고를 수리하다.

【대표 간 서명】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대표 간 서명 및 간인을 위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최정우 이사장의 발의, 이영선 이사의 동의, 강교철 이사의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홍유신 이사, 김진한 이사, 이문석 이사 3인을 선임 의결하다.

7. 이사회 폐회

이상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 다음과 같이 기명, 서명하다.

2019년 4월 24일

|  |  |  |
| --- | --- | --- |
|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 이 사 장 | 최 정 우 |
|  | 이 사 | 홍 유 신 |
|  | 이 사 | 최 영 우 |
|  | 이 사 | 이 영 선 |
|  | 이 사 | 장 영 원 |
|  | 이 사 | 강 교 철 |
|  | 이 사 | 손 봉 락 |
|  | 이 사 | 김 도 연 |
|  | 이 사 | 김 진 한 |
|  | 이 사 | 박 성 호 |
|  | 이 사 | 이 문 석 |
|  | 감 사 | 권 오 갑 |
|  | 감 사 | 강 성 원 |